

감정평가서

건명	이광오 소유물건(2025타경73042)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경호
감정서번호	DA12508-0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아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김 석 구

감정평가액	일억이천구백만원정 (₩129,000,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경호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경매6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광오 (2025타경73042)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9.01	2025.08.29 ~ 2025.09.01	2025.09.02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세대 이	구분건물 하	1세대 여	- 백	129,000,000
합 계					₩129,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전곡중학교" 동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전곡리힐스하우스2 201동 4층 401호로서, 의정부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본건 감정평가에 있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기간

가.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의 단서에 의거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9월 0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음.

나. 실지조사기간

2025년 09월 01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감정평가방법

가. 감정평가 기준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방법

-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 이외의 다른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관련 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② 본건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건물과 소유권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일체로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가격을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 건물 배분비율에 대한 지침』에 따라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였습니다.

5. 그 밖의 사항

- ① 본건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 부재 및 폐문 등으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탐문조사 등에 의하였는 바, 실제 구조 및 이용상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참여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본건 구분건물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물건 개요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18-52번지				
건물명, 동, 층, 호수	전곡리힐스하우스2 201동 4층 401호				
용 도	공동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사용승인일자	2020. 03 31				
면적	전유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대지권면적(m ²)	전용율 약(%)
	46.975	9.484	56.459	39.621	83.2

※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공용부분의 '주'에 해당하는 면적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2. 거래사례의 선정

가.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등]

기호	소재지	층/호	전유면적 (㎡)	대지권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비고
							사용승인일	
#1	전곡리 418-52 전곡리 힐하우스2 202동	2층 /***호	54.105	45.635	138,000,000	2,550,596	2025.05.08	-
							2020.03.31	
#2	전곡리 418-52 전곡리 힐하우스2 201동	4층 /***호	54.718	46.152	140,000,000	2,558,573	2023.09.14	-
							2020.03.31	

※ 거래단가 = 거래금액 ÷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대상물건과 같은 단지 내에 소재하는 사례로서 대상물건과 물적 유사성이 높고,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위 사례#1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3. 사정보정

사례 #1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
(사정보정치 = 1.000)

4. 시점수정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요지역별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 경원권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함.

구 분	적 용 년 월	가격지수	비 고
기준시점	2025년 07월	99.5	A
거래시점	2025년 04월	99.9	B
시점수정치		0.99600	A/B

※ 시점수정치는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의 각 직전 달의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여 월할 계산하되, 거래시점은 2025년 04월 지수를 적용하였으며, 기준시점은 2025년 08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5년 07월 지수를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요인구분	세부항목(주거용)	사례	대상	비고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1.00	본건은 사례 대비 대등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1.00	본건은 사례 대비 대등함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1.00	1.08	본건은 사례 대비 층별 효용 및 전유부분 면적의 크기 등에서 우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본건은 사례 대비 대등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누계)		1.000	1.08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산정

대상물건		거래단가 (원/m ²)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m ²)	산출가액(원)	비준가액(원)
기호	전유면적 (m ²)							
1	46.975	2,550,596	1.000	0.99600	1.080	2,743,625	128,881,784	129,000,000

7. 참고가격 자료

가. 인근 감정평가전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층/호	전유면적 (m ²)	평가 목적	감정평가액(원)	기준시점	비고
						사용승인일	
#a	전곡리 418-52 전곡리 힐하우스2 201동	5층 /***호	36.088	경매	113,000,000	2025.02.14	-
						2020.03.31	
#b	전곡리 418-52 전곡리 힐하우스2 201동	2층 /***호	54.718	시가참고	164,000,000	2022.10.12	-
						2020.03.31	

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구분	가 격 수 준
다세대주택 (전유면적 기준)	본건과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수준은 층별 및 위치별 차이 등에 따라 2,500,000 ~ 3,000,000원/m ² 내외 수준으로 탐문조사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 129,000,000원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대상물건은 인근 유사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인근감정평가사례 및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18-52 전곡리 힐하우스2 201동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은길 64-37			1층	18.23			
				2층~5층 각		160.2		
				옥탑5층 (연면적제외)		23.18		
	1.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18-52	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923			
				(내) 4층 4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6,975	46.975	129,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 소유권 -----	39.621	39.621		
				대지권	923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38,700,000 90,300,000	
	합 계						₩129,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전곡중학교" 동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대리석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단지형 다세대주택(전유면적 : 46.975㎡, 계단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및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서하향 경사지를 평탄하게 부지조성한 대체로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종로3류(폭 12m~15m)(종로3-전곡5)(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18-52 전곡리힐하우스2 201동 4층 401호
-----	--



위 치 도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18-52 전곡리힐하우스2 201동 4층 401호
-----	--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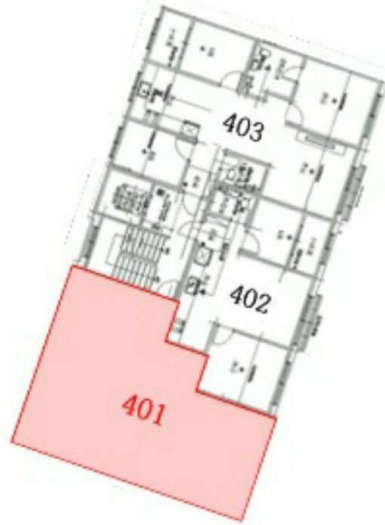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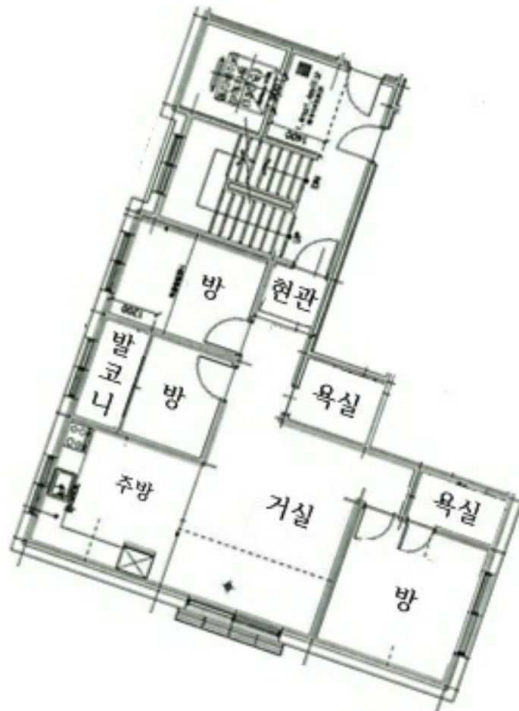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18-52 전곡리힐하우스2 201동 4층 401호



No Scale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사 진 용 지



본건전경



단지전경

사 진 용 지



공동출입구 전경



현관전경